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청에 데이터전문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필요한 인력 3명(8급 3명),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의 안정적 운영 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금융투자소득세 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시행에 필요한 인력 7명(7급 4명, 9급 3명)을 증원하고, 유관기관 간 원활한 업무협조 등 세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지방국세청의 정원 4명(4급 또는 5급 4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4명)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국세청에 인사기획과를 신설하고, 소득지원국의 명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변경하며, 한시기구인 소득자료관리단의 명칭을 소득자료관리과로 변경하여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이관하고, 국세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법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세청 인력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 인력1명(8급 1명), 지방세무관서 인력 1

95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5명, 9급 46명)을 감축하려는 것
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4.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
산과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을 “인사기획과·운영지원과·징세법
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
단”으로 한다.

제9조를 제9조의2로 하고, 같은 조(중전의 제9조) 제1항 중 “3급 또는 4
급”을 “4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분류·접수·발송·편찬·보존·관리”를 “분류·배부·편찬·보존
·관리”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인사기획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2조제2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성실납세지원 홍보 및 청소년 세금 교육에 관한 업무

20. 국립조세박물관 운영에 관한 업무

제14조의2의 제목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단서 중 “7개”를 “8개”로 한다.

제39조제2항 후단 중 “210명을”을 “214명을”로 한다.

제41조의2의 제목 “(소득자료관리단)”을 “(소득자료관리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세청”을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을 “소득자료관리과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득자료관리단에 단장”을 “소득자료관리과에 과장”으로, “단장은”을 “과장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득자료관리단장은”을 “소득자료관리과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소득자료관리단”을 각각 “소득자료관리과”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894”를 “895”로 하고, 일반직 계 “890”을 “89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77”을 “878”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0,587”을 각각 “20,398”으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0,563”을 “20,374”로 한다.

별표 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국세청 정원 9명(5급 2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과 국세청 소속기관의 정원 196명(5급 3명, 6급 44명, 7급 47명, 8급 56명, 9급 46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신·구조문대비표

<u>국세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u> (제41조의2제4항 관련)	
소득자료관리과(존속기한: 2024년 2월 21일)	
총계	12
일반직 계	12
3급 또는 4급 이하	12

현행	개정안
제4조(하부조직) ① 국세청에 <u>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소득지원국</u> 을 둔다.	제4조(하부조직) ① ----- <u>인사기획과·운영지원과·징세법무국·개인납세국·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조사국 및 복지세정관리단</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설>	제9조(인사기획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인사 운영에 관한 사항 2.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3. 국세청 소속 공무원의 복무, 교육훈련, 상훈, 징계,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지원과) ①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9조의2(운영지원과) ①-- 4급----- ②-----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무원의 임용 · 복무 · 교육 훈련 · 연금 및 기타 인사사무	<삭 제>
4. 문서의 분류 · 접수 · 발송 · 편찬 · 보존 · 관리 및 기록관 의 운영	4. ---- 분류 · 배부 · 편찬 · 보 존 · 관리 -----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제11조(징세법무국) ① (생 략)	제11조(징세법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세정홍보와 세금에 관한 교 육	<삭 제>
제12조(개인납세국) ① (생 략)	제12조(개인납세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 18. 삭 제	
<신 설>	12. 성실납세지원 홍보 및 청소 년 세금 교육에 관한 업무
<신 설>	13. 국립조세박물관 운영에 관 한 업무
제14조의2(소득지원국) ① (생 략)	제14조의2(복지세정관리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 (생 략)	제36조(지서와 출장소) ① (현행 과 같음)
② 지서에 지서장을, 출장소에 출장소장을 두되, 5급 또는 6급 으로 보한다. 다만, 7개 이내의 5급 지서장 직위는 「행정기관 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 하여 배정 · 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② ----- ----- ----- 8개 ----- ----- ----- ----- ----- -----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3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세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21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 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 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 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	② ----- ----- ----- ----- --. ----- ----- 214명 ----- ----- ----- ----- ----- ----- ----- ----- -----

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단) ① 국세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4년 2월 2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소득자료관리단을 둔다.	제41조의2(소득자료관리과) 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 ----- ----- ----- 소득자료관리과를 --.
② 소득자료관리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소득자료관리과에 과장 ----- ----- 과장은 ----- -----.
③ 소득자료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③ 소득자료관리과장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소득자료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④ 소득자료관리과----- -----.
⑤ 소득자료관리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소득자료관리과-----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국세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	.	.	.	.	.	+1	
			894		895				
일	반	.	.	.	.	.	.	+1	
			890		891				
3	급	.	.	.	.	.	.	+1	
		또는 4급 이하	877		878				
		.	.	.	.	.	.		

[별표 3]

국세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20,587</u>	<u>20,398</u>	-189
일반직 계	<u>20,587</u>	<u>20,398</u>	-189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0,563</u>	<u>20,374</u>	-189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8